#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18

발의연월일: 2021. 2. 9.

발 의 자:권명호·임이자·송언석

정희용 · 김형동 · 정진석

이만희 · 조명희 · 김기현

정점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면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 한 지도를 할 수 있고,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 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 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에너지진단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7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의 기준·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.

제33조제3호 중 "제32조제7항"을 "제32조제8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에너지진단 등) ① ~ ⑥	제32조(에너지진단 등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
	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
	과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
	평가의 기준·방법 및 결과의
	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
	<u>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</u>
<u>⑦·⑧</u> (생 략)	<u>⑧・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
	과 같음)
제33조(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)	제33조(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)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	
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	
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	
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	
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	
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	
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32조제7항</u> 에 따른 지정기	3. <u>제32조제8항</u>
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	
경우	

4. • 5. (생략)

4.•5. (현행과 같음)